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03. 12. 15
조례 제8호]

개정 2007. 6. 18 조례 제 239호
개정 2008. 3. 14 조례 제 282호
(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2. 2. 24 조례 제 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 1. 1 조례 제 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 12. 31 조례 제 65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12. 28 조례 제 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 12. 29 조례 제 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제7항에 따라 증평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8, 2008. 3. 14, 2015. 12. 31, 2022. 2.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4>

1. “보상금”이란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2. “직무”란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및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해”란 장애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5.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6.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할 당시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7. “의무직 공무원”이란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 보건의직렬 및 의료기술직렬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2. 31]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3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및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 :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다만, 제5조에 따른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액은 기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31]

제5조 삭제 <2015. 12. 31>

제6조(보상금 청구) 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및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장애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15. 12. 31]

제7조(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12. 31, 2022. 12. 29>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5. 12. 31>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청구인과 의장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9조(심의회회의 구성) 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에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3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28, 2020. 12. 29, 2022. 12. 29>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실국장, 각 과장 중 1명
3. 의무직 공무원 또는 증평군보건소장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삭제 <2015. 12. 31>

[제목개정 2015. 12. 31]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2. 31>

1.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 12. 31]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31>

[제목개정 2015. 12. 3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5. 12. 31]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목개정 2015. 12. 31]

제14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 12. 31>

[제목개정 2015. 12. 31]

제15조 삭제 <2022.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18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 14 조례 제282호, 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 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 10.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증평군의회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임.

1. 부터 3. 까지 생략

4.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5조”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한다.

5. 및 6. 생략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칙(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31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31>

접 수	제 호	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 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병연월일				상병장소	. .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각 1부 2. 장애 또는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위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증평군의회 의장 직인 증평군수 귀하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2. 31>

접 수	제 호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상병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	<결 정> <결 정 이 유> <심의위원 서명>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 증평군수 귀하						